

의안 번호	2258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b>검토보고서</b>
----------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4. 5. 2.(목)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2.(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5. 21.(화)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지원시설세 중 중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함.

##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5조)

## 4.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 제29조의2
-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우리구에 교부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2024. 2. 20.> [본조신설 2014. 5. 28.]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